

정신재활시설의 시설·수용인원 기준(제17조제1항제1호 관련)

구분	세부유형	시설기준 및 수용인원
1. 공통사항		<p>가.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할 것</p> <p>나. 입소자·이용자의 건강·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것</p> <p>다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,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, 소화 및 비상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</p> <p>라.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</p> <p>마. 적당한 냉방장치·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는 것</p> <p>바. 상담실, 사무실, 식당, 조리실 및 화장실을 갖추는 것. 다만,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은 식당 및 조리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사.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·부지면적을 확보할 것</p> <p>아. 제2호에 따른 생활시설, 제3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지역사회전환시설, 제4호에 따른 중독자재활시설 및 제6호에 따른 종합시설이 남·녀 공용시설인 경우에는 침실 및 목욕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고, 제3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운영할 것</p>
2. 생활시설		<p>가. 시설: 다음 시설을 갖추는 것. 이 경우 입소자가 24시간 휴식, 취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응접실과 침실을 말하는 거실(복도·통로, 관리인 침실, 사무실, 상담실, 다락, 식당, 조리실, 화장실, 목욕실, 세탁장, 건조장 등은 제외한다)의 면적(이하 이 표에서 "거실면적"이라 한다)은 입소자 1명당 4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응접실(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한다)</li> <li>2) 침실</li> <li>3) 목욕실</li> <li>4) 재활훈련실</li> <li>5)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대기실 또는 휴게실</li> </ol>

		<p>6) 세탁장 및 건조장</p> <p>나. 정원: 입소정원 50명 이하</p>
3. 재활 훈련 시설	가. 주간 재활 시설	<p>1) 시설: 다음 시설을 갖출 것</p> <p>가) 재활훈련실(면적은 이용자 1명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)</p> <p>나) 휴게실</p> <p>다) 집단활동실</p>
	나. 공동 생활 가정	<p>1) 시설: 다음 시설을 갖출 것.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가) 응접실(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한다)</p> <p>나) 침실(입소정원 4명인 시설은 1실당 2명 이하, 입소정원 5명 이상인 시설은 1실당 3명 이하여야 한다.)</p> <p>다) 목욕실</p> <p>라) 세탁장 및 건조장</p> <p>마) 상담실 및 사무실(상담실 및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)</p> <p>2) 정원: 입소정원 4명 이상 6명 이하</p>
	다. 지역 사회 전환 시설	<p>1) 시설: 다음 시설을 갖출 것.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가) 응접실(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한다)</p> <p>나) 침실</p> <p>다) 목욕실</p> <p>라) 재활훈련실</p> <p>마)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대기실 또는 휴게실</p> <p>바) 세탁장 및 건조장</p> <p>2) 정원: 입소정원 25명 이하</p>
	라. 직업 재활 시설	<p>1) 시설: 다음 시설을 갖출 것</p> <p>가) 직업재활훈련실(면적이 이용자 1명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)</p> <p>나) 재활상담실, 사무실 및 휴게실(재활상담실, 사무실 및 휴게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)</p> <p>다) 근로활동을 위한 시설</p>
	마. 아동· 청소년 정신	<p>1) 시설: 다음 시설을 갖출 것</p> <p>가)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(식당 및 조리실은 제외한다)</p> <p>나) 휴게실</p>

	건강 지원 시설	다) 프로그램실(면적은 이용자 1인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)
4. 중독자재활시설		가. 시설: 다음 시설을 갖추어 것.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.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 1) 응접실(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한다) 2) 침실 3) 목욕실 4) 집단활동실 또는 직업재활훈련실 5) 휴게실 6) 세탁장 및 건조장 나. 정원: 입소정원 50명 이하
5. 생산품판매시설		가. 시설: 다음 시설을 갖추어 것 1) 판매장(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) 2) 상담실 및 사무실(상담실 및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)
6. 종합시설		가. 시설: 다음 시설을 갖추어 것 1) 강당 또는 회의실 2) 2개 이상을 결합한 각각의 정신재활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

#### 비 고

- 정신재활시설(제3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사회전환 시설은 제외한다)의 장은 입소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추가로 입소하게 할 수 있다.
- 위 표 제5호에 따른 생산품판매시설은 이용자와 종사자가 이용하거나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규모를 적정히 유지하여야 한다.
- 2의2.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생활시설, 공동생활가정, 지역사회전환시설 및 중독자재활시설에는 입소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위 표에 따른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